

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5년 8월 12일 변우정의원외 1인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8월 12일

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략(서면)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개정(2005. 8. 5공포시행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별표6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7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개정)됨에 따라
 -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7조 중
 - 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,000원으로 한다.”를
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,000원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3. 검토보고 요지 : 전문위원 김창호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「구미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」
 - “제7조 중
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,000원으로 한다.”를
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,000원으로 한다.”로
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
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생략

8. 기타필요한사항 : 생략